

인천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9나546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9나5461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6가단4950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

담당변호사 장지혜

변론 종결2021. 3. 11.

판결 선고2021. 4. 8.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6가단495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136,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34,136,000원과 이에 대한 2019. 4. 5.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3. 4. 20. 13년식 유니버스 대형승합차(자동차등록번호 I였다가 2017. 2. 16. J로 변경등록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무렵 원고와 위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등록하고, 원고에게 관리비, 보험료, 각종 공과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원고의 차량운송사업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6. 8. 9. D와 사이에 지입차량을 포함하여 자동차 21대(이 사건 자동차 포함)를 양도대금 7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D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D에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30.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D는 ① 2016. 8. 26. 피고에게 위 자동차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6. 9. 1. 피고에게 100,994,024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6. 9. 1.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E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잔액 38,005,9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13. 18:00:41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F은행 계좌로 34,136,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0. 17. 이 법원 2016가단245394호로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이던 H을 상대로 '피고가 2015. 10. 7. 원고와 H에게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원고와 H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미루다가 피고와 협의 없이 위 자동차를 염가에 매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0. 7. 위 자동차를 매각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매매대금 178,189,000원과 실제 피고에게 지급된 매매대금 1억 4,400만 원과의 차액 34,189,000원, 2015. 10. 7. 이후 지급한 차량수리비, 관리비, 보험료 등 11,091,770원, 위자료 700만 원 등 합계 52,280,770원 상당의 손해(이하 '이 사건 피고 주장 손해'라 한다)를 입었다. 이에 원고와 H은 피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2. 2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2. 13. 항소기각 판결(인천지방법원 2019나54620호)이 선고되었다(피고는 위 항소심에서 원고가 D에 이 사건 자동차를 약 1억 7,600만 원에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추가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0. 6. 25.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다222825호, 이하 '이 사건 이전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9호증, 을 제2 내지 5, 22, 27, 41, 9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양도 대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인 이

사건 금원 34,136,000원을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려다가 착오로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4,1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위 1.마항에서 살핀 이 사건 피고 주장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 위하여 E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연 7%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실제로는 연 7.64%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그 이자율 차이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그 외 원고는 2016년 피고의 소득금액을 10,082,160원으로 허위로 신고한 후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을 이 사건 자동차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800만 원을 횡령하거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8,000만 원을 지급받는 외관을 만들었고, 그 결과 위 8,000만 원을 이 사건 자동차 관련 정산에 사용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야 하였다. 이에 원고는 K에게 45,863,474원을 차량할부상환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임금, 퇴직금, 차량할부금 등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등 비용처리를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35,187,240원에서 피고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34,246,585원이다. 원고는 피고와의 지입계약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인 이 사건 금원을 임금,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고, 2016. 10. 13. 피고를 퇴사처리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 참조).

2)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2, 5, 10, 12호증, 을 제1, 34, 47, 63, 71, 87, 88, 91, 95, 125, 1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금원 지급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 없이 착오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금원을 실제로 피고에게 송금한 G(현재 원고 대표이사)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직후인 2016. 10. 13. 18:01:11경 피고와 통화하고, 같은 날 18:03:59경 피고에게 "F은행 A회사 L 34,136,000원입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즉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같은 날 19:21 "내일 돌려드리겠습니다. 계좌 오류송금이군요"라고 답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송금 직후 착오로 피고에게 송금하였음을 이유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가 계좌번호를 착각하여 위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을 7억 8,000만 원으로 정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 대표이사였던 H은 수사기관에서 "양도대금은 7억 8,000만 원이 아니나, 차량 소유권이 원고 앞으로 등록되어 있어 차량 등록명의를 D로 이전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지입차주에게 부과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맞추기 위해 원고와 D 상호간에 계속하여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D가 2016. 8. 26.부터 2016. 10. 1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887,063,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2016. 9. 29.부터 2016. 10. 13.까지 사이에 K에게 위
돈 중 합계 675,963,474원을 송금하였으며, K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675,963,474원을 모두
D의 대표이사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④ 원고가 2016. 8. 26. D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8,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6. 8. 26.
D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8,000만 원, 부가가치세 800만 원으로
기재한 사실, D가 2016. 10. 13.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D는
2016. 8. 26.과 2016. 9. 1. 피고에게 합계 105,994,024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의 E에 대한
대출금채무 38,005,976원을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약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2016. 9. 1. K에게 "이 사건 자동차 거래내역 총 1억 4,500만 원, 부가가치세
800만 원, 중개수수료 100만 원. 합계 1억 5,400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2016. 8.
30. D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D는 원고에게 위 8,000만 원
이외에도 807,063,000원을 더 송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지급 등의
절차는 실질적으로 피고와 D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양도 대금 지급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와 D가 위와 같이 자금을
집행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고의로 송금하거나, 그 외 탈세, 횡령,
비용처리 등을 위해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의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피고가 위 기간 원고로부터 합계
35,187,240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지입차주이고 특별히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원고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무렵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④ 피고가, 이 사건 피고 주장 손해를 구한 위 이전 소송에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하여 달리 위 피고 주장 손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외 원고가 위 피고 주장 손해를 포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도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4,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 [제1심 변론종결일이 2018. 5. 23.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비채변제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도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742조 또는 제744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살피건대,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18723 판결 등 참조).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지급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 없이 착오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있어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원인급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횡령, 탈세,

비용처리 등 불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불법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예비적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피고 주장 손해배상금 채권 52,280,770원¹⁾으로 원고의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제1항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 소송에서 피고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위 피고 주장 손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원고가 위 피고 주장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2019. 4. 5.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공탁금 등 34,136,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어 가집행선고가 실효될 경우 원고를 상대로 위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15조 소정의 가지급물반환은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는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효인

판사소병진

판사원용일

1) 피고는 2017. 4. 20.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금 채권이 56,341,770원임을 전제로

예비적 상계항변을 하였다가, 2017. 7. 17.자 및 2017. 10. 11.자 준비서면에서 손해배상금 채권이
이 사건 피고 주장 손해금인 52,280,770원이라고 주장하였다.